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월 15일, 황두영 의원 외 18명

나. 회부일자: 2024년 1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황두영 의원

나. 제안이유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제명)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피해학생 지원 교육, 보호 사업(안 제5조, 제6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8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경형)

가. 제안취지

-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 1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의 목적과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
-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 학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예방 및 대응 교육 사업과 피해 학생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위원회 운영에 관해 규정함.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운영과 지원 사업(제6조) 위탁에 관해 규정함.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와 유관기관인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청 및 성범죄 피해학생 지원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규정함.

다. 종합의견

- 최근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상북도 학생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전 예방 및 피해 학생의 보호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타시도 조례제정 현황 : 12곳(경기,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충남, 충북)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